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80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김문수 · 김준혁 · 채현일
조계원 · 김태년 · 김한규
부승찬 · 소병훈 · 노종면
손명수 · 강경숙 · 문진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면책의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교육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하여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직원 등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발생한 사고와”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와”로,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10조제3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사상 책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 중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② (생 략)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u>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 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 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 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 급하여야 한다.</u>	③ ----- <u>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와-----</u> ----- <u>마련하</u> <u>여야-----.</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 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 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u><삭 제></u>
<u><신 설></u>	제10조의5(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u>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 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10조 제3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u>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
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형
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
을 포함한다)을 지지 아니한다.